

의안 번호	제3683호
----------	--------

##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10월 10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10월 20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10월 23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10월 23일

### 2. 제안이유

- 「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25. 2. 7.자로 시행됨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(안 제2조 및 제3조)
- 나. 복합개발사업의 제안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및 제5조)
- 다. 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(안 제6조)
- 라.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요건(안 제7조)
- 마.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(안 제8조)
- 바. 시행규정에 정할 사항(안 제9조)
- 사.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(안 제10조)
- 아. 도심복합개발사업의 공공기여에 대한 근거 마련(안 제11조)
- 자. 완화 용적률에 적용되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- 차. 사업시행자의 관계서류 인계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7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9. 주문사항 :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